M - 92 - 2013

이동식 승강 테이블에 관한 기술지침

2013. 11.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ㅇ 작성자 : 임영훈

ㅇ 개정자 :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시스템연구실

ㅇ 개정자 :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연구실

- 제·개정 경과
 - 2005년 8월 KOSHA Code 기계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
 - 2005년 10월 KOSHA Code 총괄제정위원회 심의
 - 2011년 12월 기계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개정, 법규개정조항 반영)
 - 2013년 9월 기계안전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심의(개정)
- ㅇ 관련규격 및 자료
 - Safety requirement for lifting tables(EN 1570)
- o 관련 법규·규칙·고시 등
 -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85조(중량물 취급)
- ㅇ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
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 페이지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13년 11월 25일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M - 92 - 2013

이동식 승강 테이블에 관한 기술지침

1. 목 적

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(이하 "안전보건규칙"이라 한다) 제385조(중량물취급)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에서 인력운반을 대체하는 이동식 승강 테이블의 설계·제작시 제조자가 고려하여야 할 기술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정격하중 200 kg 내지 1,000 kg 이하의 이동식 승강 테이블에 적용한다.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.

- (1)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승강 테이블
- (2) 수직 행정거리가 2 m 이상인 승강 테이블
- (3) 장애인이 탑승하는 동력식 승강 테이블
- (4) 공항용, 해상용 또는 소방용 승강 테이블
- (5) 이동식 고소작업대
- (6) 차량 유지보수용 승강 테이블
- (7) 지게차, 팔레트 트럭용 이동식 승강 테이블
- (8) 이동 속도가 1.6 m/s 이상인 승강 테이블
- (9) 레일식 저장 및 복구용 승강 테이블
- (10) 무대용 승강 테이블
- (11) 고정식 승강 테이블

M - 92 - 2013

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- (가) "승강 테이블(Lifting table)"이라 함은 물건을 적재하고 인력 또는 동력을 이용 하여 상승·하강되는 테이블을 말한다.
 - (나) "이동식 승강 테이블(Mobile lifting table)"이라 함은 이동이 가능한 승강 테이블을 말한다.
 - (다) "수직 이동거리(Vertical travel)"라 함은 승강 테이블의 최고점과 최저점 사이의 수직거리를 말한다.
 - (라) "정격하중"이라 함은 사용설명서에 제시된 방법과 조건으로 이동식 승강 테이블을 사용할 수 있는 최대하중을 말한다.
- (2)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, 안전보건 규칙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4. 안전요건

4.1 강도

- (1) 이동식 승강 테이블은 정격하중으로 인한 응력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.
- (2) 사용된 부품은 수직 정격하중의 1.4배에서 영구변형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.
- (3) 이동식 승강 테이블은 테이블 길이의 1/2에 걸쳐 분포된 정격하중의 50 %를 승강할 수 있어야 한다.

KOSHA GUIDE M - 92 - 2013

4.2 안정성

이동식 승강테이블은 경사도가 2.5 %인 경사로 위에서 안정도가 가장 낮은 방향과 지점에 위치하여도 전복되지 않아야 한다.

4.3 기계적 위험에 대한 대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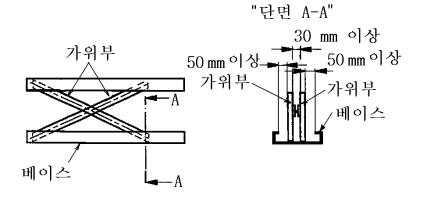
(1) 끼임 등 기계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움직이는 부위와 고정부분 사이의 간격은 〈표 1〉과 같은 최소간격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.

〈표 1〉 끼임 등 방지를 위한 최소간격

(단위: mm)

<u>끼임 등</u> 위험 신체부위	최소간격
손가락	25
발가락	50
손	100
발, 팔 또는 주먹	120

(2) 이동식 승강 테이블의 가위부(Arm)와 베이스(Base) 사이의 최소 안전간격은 〈그림 1〉과 같아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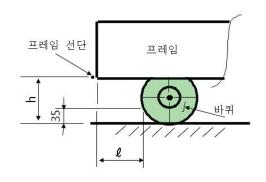


〈그림 1〉 가위부와 베이스 사이의 최소 안전간격

(3) 구동부 및 상호교차부 등 사람이 접촉할 수 있는 부분에는 날카로운 모서리, 거친 면이 없어야 한다.

M - 92 - 2013

- (4) 이동식 승강테이블의 승강속도는 0.15 m/s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, 만약 하강속도가 최고 설계속도를 초과할 경우, 테이블의 하강속도가 0.25 m/s를 초과하기 전에 정지 시킬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.
- (5) 테이블이 최저위치 상태에서 이동식 승강테이블의 수평 이동속도는 1.1 m/s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.
- (6) 이동용 바퀴에는 〈그림 2〉와 같이 안전거리를 확보하거나 〈그림 3〉과 같이 보호가드가 설치되어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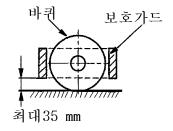


- · h < 35 mm인 경우
 - : l = 10 mm 이상
- · 35 mm $\leq h$ 〈70 mm인 경우
 - : l = (2.57h 80) mm 이상
- · 70 mm $\leq h$ (120 mm인 경우
 - : l = (1.60h 12) mm 이상

<적용 예시>

h = 55 mm 인 경우 l = (2.57×55 - 80) = 61.35 mm 이므로 62 mm 이상으로 설정 h = 117 mm 인 경우 l = (1.60×117 - 12) = 175.2 mm 이므로 176 mm 이상으로 설정

〈그림 2〉 바퀴의 안전거리



〈그림 3〉 바퀴의 발 보호가드

M - 92 - 2013

(7) 이동식 승강 테이블에는 용이하게 당기거나 밀수 있도록 손잡이를 부착하되 손가락이 나 손이 끼이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.

4.4 불시이동 방지

- (1) 이동식 승강테이블에는 불시에 움직이지 않도록 브레이크 등을 장착하여야 한다.
- (2) 모터의 전원을 켜거나 구동시켰을 때 불시에 이동식 승강테이블이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.

4.5 운전자 조작 위치

운전자는 조작 위치에서 테이블의 승강상태 및 이동상태를 언제라도 확실히 볼 수 있어야 한다.

4.6 조작장치 등의 안전대책

- (1) 조작장치는 운전자가 쉽게 닿을 수 있도록 설계 및 배치되어야 한다.
- (2) 모든 조작장치는 누르고 있는 동안에만 작동되는 가동유지(Hold-to-run)방식이어야 한다.
- (3) 허가된 자 이외에는 조작장치를 조작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.
- (4) 조작장치는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되어야 하며, 이동식 승강 테이블 이동시 필요한 힘은 30 kg_f, 이동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힘은 20 kg_f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.
- (5) 모든 조작장치는 불시에 작동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.
- (6) 비상정지장치가 각 조작 위치마다 설치되어야 한다.

M - 92 - 2013

4.7 기계적 구동시스템의 안전대책

- (1) 하중을 지지하기 위하여 와이어 로프가 사용된 경우 당해 와이어로프의 인장강도는 157 kg/mm² 내지 196 kg/mm² 이어야 한다.
- (2) 와이어 로프 또는 체인의 안전율은 5 이상이어야 한다.
- (3) 모든 기계적 구동시스템에는 상승장치의 일부가 파손되어도 테이블이 100 mm 이상 내려가지 않고 정지되며, 정지상태를 유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.

4.8 유·공압 구동시스템의 안전대책

- (1) 구동시스템을 구성하는 실린더, 파이프, 밸브, 부속품 등은 모두 영구변형을 일으키지 않고 최대 사용압력의 2배에 해당하는 정압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.
- (2) 모든 유·공압 호스 및 관련 부속품의 파열압력은 최대 사용압력의 3배 이상이 어야 한다.
- (3) 유·공압이 최대사용압력의 110 %를 초과하지 않도록 압력방출밸브를 설치하되 임의로 조정할 수 없어야 한다.
- (4) 유·공압 공급라인이 파손된 경우에도 테이블이 최대 100 mm 이상 하강되지 않아야 한다.
- (5) 테이블 승강하기 위하여 펌프를 인력으로 작동시키는 경우 수동식은 조작력이 20 kg_f , 발판식은 30 kg_f 이하 이어야 한다.

4.9 전기장치에 대한 안전대책

이동식 승강 테이블의 전기장치에 관한 사항은 KOSHA GUIDE E-94-2011 "산업용 기계설비의 전기장치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"의 요구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.

M - 92 - 2013

5. 안전표지 등

- (1) 잔류위험이 존재하는 곳에는 금지, 경고, 주의 또는 지시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.
- (2) 부착되는 모든 표지는 잘 보이는 곳에 내구성 재질로 손상되지 않도록 부착되어야 하며, 이해하기 쉽고 한글로 작성되어야 한다.
- (3) 모든 조작 버튼, 레버, 핸드 휠의 윗면 또는 옆면에는 그림문자 또는 그밖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기호로 이동 방향이 표기되어야 한다.
- (4) 주 전원차단장치에는 "주 전원차단장치"라고 표기되어야 하며, 공압 등 그밖의 동력 공급원이 사용될 때는 이와 유사한 문구가 표기되어야한다.
- (5) 명판에는 정격하중, 제조업체명 및 주소, 형식 및 일련번호, 보호등급, 중량, 전원 명세, 최대 작동압력이 포함되어야 한다.

6. 사용 설명서

제조자는 이동식 승강테이블을 안전하게 사용·유지보수·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용설명서를 한글로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
- (1)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
- (2) 안전사용에 관한 사항
- (3) 안전운반에 관한 사항
- (4) 안전조작 및 비상정지에 관한 사항
- (5) 화물 적재방법에 관한 사항

KOSHA GUIDE M - 92 - 2013

- (6) 안전장치 사용에 관한 사항
- (7) 이상 발생시 조치방법에 관한 사항
- (8) 유지보수·점검·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(9) 그밖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